

임용권의 위임 (제5조제1항 관련)

수 임 자	위 임 사 항
상임위원	(1) 복수직 3급 공무원의 전보, 겸임, 파견, 휴직 및 복직 (2) 4급 공무원의 전보, 겸임, 파견, 강임, 휴직, 직위해제, 정직, 강등, 복직 및 면직(법 제70조에 따른 직권면직은 제외한다) (3)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 및 행정부 소속 4급 공무원의 전임 임용 (4)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공무원의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 및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의 전출 (5) 법 제74조에 따른 4급 공무원의 정년퇴직
사무총장	(1) 5급 공무원의 전보, 겸임, 파견, 강임, 휴직, 직위해제, 정직, 강등, 복직 및 면직(법 제70조에 따른 직권면직은 제외한다) (2)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 및 행정부 소속 5급 공무원의 전임 임용 (3)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 공무원의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 및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의 전출 (4) 법 제74조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정년퇴직